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2月23日(月) 午後2時

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
 2.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
 4. 1991年度內務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3.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4. 1991年度內務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36面
-

(14時 15分 開議)

○委員長 鞠應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서울特別市議會 定期會 第4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그 동안 豫算審議해서 通過시키느라고 여러 委員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쉴 사이도 없이 계속 議政活動

에 勞苦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市民들에게 奉仕하겠다고 나왔지만 요즘 같아서는 명실공히 그 奉仕가 참 지나칠 정도로 심한 形便입니다. 委員님들 苦生이 많습니다. 우리 執行部에 계신 關係官 여러분들께서도 까다로운 豫算審議에 여러 가지 資料를 提供하신다든지 說明하시느라고 苦生이 많으셨습니다.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豫算審議 通過인데요, 그 일은 끝났지만 나머지 몇 가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日間 本會議가 더 있을 것 같고 우리 內務委員會는 오늘로써 常任委員會를 끝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고생이 되시겠지만 이번 會期 끝까지 有終의 美를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3.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16分)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議案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提案者이신 市當局에서 內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內務局長입니다. 3個 條例案의 提案說明

을 올리기 前에 지난 번 저희 內務局所管 豫算案에 대해서 內務委員會 鞠應好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委員께서 積極적으로 協調해 주셔서 앞으로 執行部에서 同業務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원래 豫算의 참뜻을 살려서 성심껏 열심히 執行할 것을 約束 드리고 그간 勞苦에 대해서 衷心으로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했던 세 가지 案件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制定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올리면 지난번 業務報告時에 이미 報告를 올렸습시다만 現行 模範市民과 公務員賞에 대한 施賞制度가 各 分野와 人員에 있어서 너무나 過多하고 昨年의 경우에 보면 市民이 1萬 4,000餘 名, 公務員이 4,000餘 名 해서 이와 같은 것이 各 局別로 功績審査週程에 이르다 보니까 客觀性이나 公正性, 信賴性이 극히 미흡하고 名譽보다는 現實的인 必要性 때문에 受賞을 원하는 等 制度 本來의 趣旨와 目的에 附屬되지 않아 이를 대폭 縮小 調整해서 市政과 地域社會發展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市民과 公務員을 市民이 직접 推薦하고 選拔해서 施賞함으로써 名譽와 矜持를 심어 주고 千萬 市民과 5萬 서울市 公務員의 龜鑑으로 삼고자 하여 現行 서울特別市模範統班長및模範市民表彰에관한規定을 廢止하고 대신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을 條例에 制定해서 앞으로 施行하고자 本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賞의 種類는 年間 5個 分野에, 年間 500餘 名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來年度에는 豫算을 300名分을 기이 反映해 두었습니다. 公務員賞은 3個 部門이 되겠습니다만 淸廉勤儉, 親切奉仕, 市政發展 이 3個 部門에 年間 200名 內外로써 施賞하며

受賞者에게는 賞牌, 메달과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이 되겠습니다.

단 下位職 公務員들의 士氣 低下를 勘案해서 지금까지 많은 人員을 한꺼번에 大幅 1,000名 以內로 縮小하는 것은 問題가 있어서 現行 約 4,000名 水準에서 來年에 2,000名 水準으로, 93年度에는 1,000名 水準으로, 94年度에는 자랑스러운 公務員賞에 완전히 吸收 統合하는 方案으로 앞으로 運營할 그런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以上으로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 提案說明을 올리고,

두번째는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改正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改正事由는 서울特別市와 그 所屬機關 職制가 變更됨에 따라서 이 條例의 地名委員會 委員과 관련된 規定中 過去에 올림픽준비단 文化擔當官을 文化觀光局 文化課長으로 變更하여 職制에 맞도록 條文整理하기 위한 上程입니다. 關聯規定은 서울特別市와 그 所屬機關의 職制 第14條의 文化觀光局에 文化課, 文化財課, 觀光課 및 國際交流課를 둔다고 規定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在 施行 中에 있는 條例에는 올림픽준비단으로 指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現 職制와 附屬되게 맞추기 위해서 改正案을 上程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公印條例의 提案에 대해서 報告를 올립니다. 서울特別市公印條例制定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면 금번 公印條例制定案을 上程하게 된 동기는 91年 6月 19日字로 事務管理規程이 大統領令으로 公布되어서 9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하게 됨에 따라서 同規程 第41條의 規定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의 公印에 대하여는 同規程에 불구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81년부터 制定되어 施行되어 오던 서울特別市官印規則을 서울特別市公印條例로 制定해서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施行코자 하는 規定이 되겠습니다. 主要制定案의 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公印의 交付는 …….

(「公印條例가 됩니까?」 하는 委員 있음)

○內務局長 李元宅; 官印입니다. 過去의 官印을 이제는 公印으로 大統領令이 모두 다 用語를 統一해서…….

첫째, 公印의 交付 및 登錄時에는 市長의 官印은 總務處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當該 地方自治團體長인 市長이 直接 製作, 登錄토록 하되 다만 以外 條例에 의한 規定으로 되어 있고 區廳長 官印 역시 市長의 承認을 얻어서 交付, 登錄하던 事項을 自治區 團體長인 區廳長이 직접 製作, 登錄함으로써 서울特別市公印條例와 自治區別 公印條例에 新設을 해서 이를 準則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提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再交付 및 廢棄時에 있어서도 公印의 交付機關에 廢棄 申告後에 燒却하거나 인영을 알아 볼 수 없도록 適切한 措置를 하라는 事項을 行政機關이 廢止되거나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公印을 廢棄치 않고 政府記錄保存所에 移管해서 保管, 措置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번째는 公印의 備置 및 간수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하였습니다. 즉, 市長職印의 경우 市民課長이, 事業所長 職印의 경우 文書取扱部署長이 備置 및 간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公印種類, 規格, 公告, 인영의 印刷使用 등에 관한 細部事項 및 書式을 정하여 公印의 간수 및 管理에 充實을 기하고자 管理方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하던 모든 官印은 계속 유효하게 使用할 수 있도록 附則에 그 經過規定을 두었습니다. 이

上으로 세 個 條例案에 대해서 簡略하게 提案說明을 올렸습
니다.

○委員長 鞠應好;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하시
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炳敦; 專門委員입니다. 配付해 드린 油印物에
의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
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 및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올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 檢討報告書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다음으로 서울特別市 公印條例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 公印條例 檢討報告

(뒤에 실음)

.....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도 끝났고 提案說明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各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시고 該當 機關에서는 答
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鞠應好; 質疑는 一問一答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깊은 내용이 없는데니까 質疑하시는 委員님에 대해서 執行機關에서는 바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李永鎬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永鎬 委員; 우선 專門委員이 檢討한 것에 대한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鞠應好; 專門委員의 檢討案에 대해서 執行部側의 答辯을 들어 본다.....

○李永鎬 委員; 네.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專門委員이 檢討한 事項은 우리가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前提로 해서요.

○李永鎬 委員; 아니, 그 意見を 들어보고 決定을 하자 이것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들어보고 우리가 決定을 하자.....

○李永鎬 委員; 네.

○李丁煥 委員;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한 것은 우리 委員들한테 報告한 것이니까 이것을 곧바로 內務局長님이 答辯을 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反復을 하더라도 取捨選擇해서 우리 委員들이 專門委員이 檢討한 內容中에서 取捨選擇해서 質疑하는 式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李永鎬 委員;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發言權 얻은 김에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市民賞, 過去에 濫發하던 것을 줄이고 賞의 權威를 높인다 하는 이런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市民들의 경우는 여기 施賞의 範疇인가요? 뭐 이런 것 정해 놓은 것은 얼른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깊이 檢討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公務員들이 받는 賞의 種類에 조금 意見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順序가 항상 이렇게 되면 施賞할 때도 이 順序대로 부르고 施賞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第1分野의 施賞이 항상 더 무게가 주어지는 이런 效果가 있는데 첫째 清廉, 勤儉部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勤儉은 別途지만 清廉이라는 것은 當然한 것이거든요. 公務員들이 清廉해야지 그리고 清廉은 일단 清廉하게 되면 더 清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清廉이라는 것은 清廉하는 것으로 절대니까 絶對的인 어떤 基準이 있으니까 뭐한 사람이 清廉한데 그보다 더 清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清廉하다, 가장 清廉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概念입니다.

그래서 그 部門을 어떻게 좀 檢討를 해 가지고 어떻게 달리 살렸으면, 勤儉 같은 것은 勤儉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더 勤儉할 수가 있는데 清廉은 清廉한 사람이 市公務員 가운데 예를 들면 5萬名 가운데 4萬名이라고 그러면 4萬名은 다 清廉한 것입니다. 더 清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部分을 좀더 檢討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清廉이라는 것은 상당히 消極的인 것입니다. 消極的인 그런 基準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親切奉仕 또 市政發展 이것은 아주 積極的인 것입니다. 積極的으로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行蹟인데 本委員의 생각에는 順序가 말이에요. 市政發展이 가장 앞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親切奉仕라 하는 것은 정말 積極性 가운데도 중간쯤 積極性이지 市政發展이 가장 積極的으로 市の 市政을 改善해 보겠다는 努力에서 나오는 것이 市政發展이고 그 다음에 親切奉仕라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그냥 열심히만 한다 親切하게 한다 이런 霧圍氣 때문에 그것이 市政發展보다 뒤에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清廉

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清廉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곤란한 問題가 생길 것 같아요. 清廉은 絶對的인 基準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清廉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清廉을 빼고 다른 것을 하게되면 오히려 順序를 바꾸어 市政發展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親切奉仕 들어가고 그 다음은 勤儉部門이라든가 이걸 세번째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이 部門이라는 것이 꼭 順序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施賞을 하다보면 恒常 첫째 部門이 제일 먼저 施賞을 받게 됩니다. 그게 가장 빛이 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봤을 때 順序를 그렇게 바꾸고, 第1部門은 뭐냐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答辯 듣고 또 그렇게 합시다. 見解를 묻는 이야기이니까 內務局長께서 지금 李委員 말씀하신 데 대해서 正答은 없습니다만 한번 局長의 見解를 말씀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李元宅; 李永鎬 委員께서 말씀하신 우선 市政을 積極的으로 펴나가는 積極的인 分野를 公務員의 3個部門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親切奉仕, 清廉勤儉 順으로 하되 清廉의 基準을 客觀的으로 두기가 꼭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李永鎬 委員; 아니요, 客觀的으로 어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清廉이라는 것은 清廉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도수로 比較할 수가 없습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네, 그렇습니다.

○李永鎬 委員; 그러니까 거꾸로 하려고 하면 이게 돼요. 가장 不正이 적은 사람을 준다 그러면 돼요. 그것은 도수가 差異가 납니다. 不正은 조금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清廉은 그 도수로 區分이 안 돼요. 清廉하면 그 以上은 다 똑같

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內務局長 李元宅; 그렇게 말씀하신 內容같습니다만 清廉의 義務는 우리 公務員들이 갖추어야 될 제일의 精神的 義務가 아니냐는 뜻에서 이걸 제일 먼저 앞세움으로 해서 다시 한번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永鎬 委員; 거기 서 계신 분한테 미안합니다만 서울시에 속하는 公務員들이 몇 萬名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清廉하다 해서 이게 清廉도 大賞도 있고 몇 個가 있겠죠. 賞이 그렇죠? 몇 十名 또는 몇 百名을 했다 했을 때 나머지는 清廉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 概念 自體가 가지고 있는 屬性이 있어요, 清廉이라는 概念.

○內務局長 李元宅; 알겠습니다. 屬性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運營하고 있는 것을 參考로 말씀드리면 주로 監査官室에서 많이 分析되고 있는 資料이긴 합니다만 가장 民願이 많고 또 利權에 介入될 素地가 가장 많고 市民의 誘惑이 많은 業務를 몇 個로 分類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稅務分野라든지, 그 다음에 建築行政 分野라든지, 그 다음에 土地形質變更等 해서 業務에 分類되어 있는 그 當該業務에 在任하는 동안에 그런 各種 事故가 없는 것 또 各種 그런 狀況이 전혀 問題가 없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現在 循環補職 等해서 考慮할 수 있는 清廉賞으로써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制度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檢討가 되어야 될 問題 아니겠느냐, 예컨대 民願室에서 일부 單純業務에 대해서 별로 市民으로부터 큰 誘惑이 없는 자리에 아무런 事故 없이 勤務한 者하고 대단히 民願이 많은 分野에서도 오직 그 사람만이 큰 事故 없이 보냈을 때 저희들이 지금 現在 清廉度를 그런 方法으로

일단 測定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關係는 答辯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業務의 積極的인 開發과 發掘을 위해서 市政에 寄與했던 市政發展改善 分野가 오히려 公務員이 當然히 지켜야 될 消極的인 分野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意味는 저도 그 點에 대해서는 상당히 同感을 하고 있습니다.

○李迎春 委員; 그런데 反對意見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모든 國民이 또 그리고 公務員들의 賞이 물론 모든 公務員이 清廉하고 勤儉한 것은 事實이지만 기왕에 公務員에게 주는 賞이기 때문에 清廉하고 勤儉한 部分이 아주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市 執行部에서 內務局에서 내놓은 이 清廉勤儉部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異議가 없고 이런 部分을 살려야 한다고 저는 執行部側의 立場을 贊成하는 立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 問題는 지금 答辯을 要求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李迎春 委員; 네, 아닙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語彙의 物理的인 解釋에 따라서 見解의 差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李永鎬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清廉하면 解釋에 따라서는 清廉이라고 하는 것은 差等を 둘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見解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實際的으로 옛날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清廉을 잘 하는 사람이 그 社會의 示範이 되어왔던 것도 또 事實이니까 그런 點을 勘案해서 만일 이 文章을 다시 뜯어고칠, 이따가 結論이 나게 되면 그런 것을 國文學者에게 한번 諮問을 좀 하셔서 補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見解의 差異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吳委員, 말씀하십시오.

○吳基昌 委員;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受賞 對象者가 市民의 경우 1年以上 서울市에 居住한 事實이 있는 市民이나 團體, 公務員은 3年 以上 서울市 本廳과 傘下機關에 勤務하고 있는 有功 公務員이나 機關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市民의 경우도 3年 以上은 살아야 서울市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檢討해 보시고요.

委員會 構成의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專門 委員이 報告한 대로 서울特別市議會 事務局長을 當然職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千萬市民을 代表하는 市議員 若干 名 3名 내지 5名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局長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마이크 내려 놓고 앉아서 答辯하시죠. 뒤에서 全部 봐주셔 가면서 一問一答으로 이야기 합시다.

○內務局長 李元宅; 市民의 경우에 1年 以上으로 規定을 했던 것은 서울市の 公務員으로서 試驗을 친다든지 이럴 때에는 當該 서울市の 轉入日字가 1年이 經過된 規定 各種零細民等 策定에도 우선 그런 規定을 두었기 때문에 市民의 功績은 우선 最小限度 1年은 서울市の 市民의 資格을 取得해야만 되는 餘他の 다른 規定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年間이란 規定을 했고, 公務員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長期勤務한 者가 市政發展이나 功을 認定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3年이라는 이런 規定을 두었습니다.

지금 現在 大統領의 勳·褒章 같은 것은 적어도 서울市에

10年 以上이라든지 하는 規定을 더 長期로 두고 있는 狀況으로 봐서 예컨대 市民의 경우를 3年이란 長期로 規定을 했을 때 長期는 안 됐습니다만 예컨대 善行을 시민이 했든 暴力強盜를 檢舉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도 자랑스러운賞을 탈만한 분이 漏落되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아마 最小限度 一般的으로 방금 前에 이야기했던 援護對象者나 안 그러면 零細民對象者하는 規定 1年을 가지고 일단 그것은 다시 한 번 어느 것이 좋은 意見인가 저희들도 한번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만 基準은 그런 規定에 의해서 두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審査委員을 12名 내지 15名을 둔다 하는데는 지금 現在 이야기한 대로 事務局長을 當然職으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市民의 代表性이 있는 議會 議員을 몇 분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를 저희들도 檢討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內務行政分野에 幹事님이 當然職이기 때문에 하는 또 그 외에도 여기에 造詣가 깊은 분들을 委員으로 委囑하는 問題등을 앞으로 運營上의 問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條例案에는 담지를 않고 다만 議會를 代表해서 事務局의 局長을 일단 內務局長하고 같이 동수로 두었고 그것은 또 하나 이 運營委員 열두 분 내지 열다섯 분을 委囑職을 할 때 委員님들의 뜻에 따라서 運營할 수 있는 그런 彈力的인 制度를 저희들이 앞으로 더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基昌 委員; 알겠습니다.

○金容一 委員; 그 賞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關與할 必要가 없다 이 이야기지.....

○委員長 鞠應好; 지금 答辯 中에 제가 조금 補充해서 말씀드릴 것은 1年을 한 3年으로 公務員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절대 贊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市民이 자꾸 되도록 誘導하는 趨勢라면 뭐 1년이 아니라 6個月도 좋겠지만 지금 서울市民이 되지 말아 달라고 자꾸 이렇게 바라는 때인데 적어도 서울에 와서 貢獻을 하고 서울市長으로부터 賞을 받으려면 한 3年은 와서 산 다음에 뭐 賞을 주든지 그래야지, 1年밖에 안된 사람을 賞을 주는 것은 根據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그런 생각이고,

하나 더 根本적으로 市政府에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니 各種 委員會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울시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 委員會에 어느 것은 얼핏 지금도 그런 意見이 나왔습니다만 市議會 議員이 參與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意見도 나왔다가 또 그 이야기가 市議會 議員은 하여간 사설이야 어쨌든 形式上으로는 市民이 뽑은 最高의 最終機關인데 거기에서 그 밑에 무슨 各種 委員會에 參與해서 그 委員의 立場에서 가서, 個人의 立場이라면 별 問題지만 거기에 參與한다고 하는 것은 格이 안 맞는다 이런 理論이 하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各種 委員會에서 했던 일을 市議會에서 關與하거나 審査하거나 同意를 받거나 議決하거나 그런 事項이 아니고 市議會는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는 사이에 다 該當 各種 委員會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市議會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야 아예 아주 市民의 代表性을 必要로 하는 各種 委員會는 市議會에다 아주 委託을 해 버리고 그러고 나면 公務員 立場에서도 市民의 代表性을 또 만들고 市議會 議員 以上の 市民 代表性은 없거

든요. 그런 意味에서 例를 들면 이런 表彰審査委員會도 例를 들면 아주 市議會에 맡겨서 거기서 審査해 주시오 우리가 推薦만 할테니까 이러한 制度를 만들어 버리면 다시 또 市民을 代表한 사람을 갖다놓고 審議하고 또 市民의 代表에 옥상옥으로다 또 代表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兩論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執行部에서 專門家들의 意見도 듣고 이래서 各種 委員會에 市議員들이 參與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參與하지 않아야 하는 무슨 理論的인 根據가 있는 거냐, 이것을 根本的인 問題를 한번 內務局長께서 그 企劃管理官室과 相議해서 한번 討論해 주세요.

○內務局長 李元宅; 네, 그 點에 關聯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內務委員會 여기에 造詣가 깊으신 분을 委員으로 맞이하는 것도 自然人을 前提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問題가 되냐 하면 저희들 執行部の 業務에 關與해서 그 業務가 잘 되었는지 나중에 監査를 하거나 할 때는 과연 이 自動性的인 原則이라든지 이런 關係 때문에 執行에 關與하고 다시 監査를 들어갈 수 없는 事案이 아니야 하는 것이 一般的인 理論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느 委員會 누구 하는 또는 이러한 當然職을 그래서 內務委員會 幹事 누구 하는 當然職을 條例에다 전혀 넣지 못하는 理由는 바로 그 執行과 그 執行을 監視 監督하는 이들과 다른 客觀的인 分野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지난 번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그 問題가 또 하루 동안 論議가 되었습니다만 만일에 都市計劃委員 中에서 委囑을 하는 분들이 만일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自然人으로서 거기에 權威있는 者로서 參與하는 方向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幹部들도 論議했던 內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條例案에는 事務局長을 둔 理由도 역시 議會의 意見을 尊重하면서 나중에 監査를 할 때 바로 自繩自縛하는 自動性的의 原理를 이렇게 排除하는 것이 原則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여기에다 案을 넣지 못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 올릴 것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委員님들 그래서 만일 이런 委員會에서 그 市民의 代表性이 있는 問題에 대해서 뭘 자꾸 市當局에서 依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專門性을 必要로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一般的인 市民 代表性을 가진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그 委員會 自體를 아주 이견 議會의 意見을 들어서 措置한다는 식으로 차라리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市民 代表性이 있고 또 밑에다 市民 代表性이 있는 또 무슨 委員會를 만들어서 나중에 市議會가 그 自體를 가지고 審査하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 일일이 따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은 監査權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內務局長 말씀하시는 것이 論理上으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最終적으로 監査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때 도 우리 한발 디밀어 놓고 거기에 參與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語弊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李永鎬 委員; 거기에 意見이 좀 있어요.

○委員長 鞠應好; 네, 말씀하십시오.

○李永鎬 委員; 얼른 생각하게 되면 市議會 지금은 事務處長으로 되어 있지요? 事務處長이 市議會라는 이름으로 이제 參與한다.....

○金泰雄 委員; 事務局長.

○李永鎬 委員; 앞으로는 處長이 되잖아요?

○金泰雄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 現在를 이야기해야죠.

○李永鎬 委員; 아니, 앞으로 處長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地自法이 바뀌어서 앞으로 處長이지요?

○委員長 鞠應好; 네, 앞으로 處長이죠.

○李永鎬 委員; 그런데 處長은 市議會를 代表를 못합니다. 處長은 局長이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왜냐하면 當選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市議會 議員들이 이런데 參與하게 되면 監査할 때 問題가 생긴다, 監査할 때는 監査規程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參與한 것은 忌避하도록 되어 있어요. 忌避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몇 명 參與했다고 해서 監査하는 데 크게 支障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議員이 參與했다라도 잘못했으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市議員들이 몇 명 參與했다 해서 그 委員會가 市議員들이 그렇게 해 놓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問題없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否認하는 것은 아닌데 監査하고 結付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市議員들이 參與해 가지고 市民賞의 審査가 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더 重要하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監査할 때 不偏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一次的인 考慮事項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副次的인 問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參考해 주시고 또 金泰雄 委員님 말씀하시죠.

○金泰雄 委員; 저는 여러 執行部에서 넘어온 案에 대해서 궁

금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의 第6條인가요 第1項의 「施賞을 할 때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市長이 정하는 賞金이나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賞金이나 手當의 支給 豫想額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한번 여쭙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에서 6페이지 第14條에 公印事故報告書を 交付機關에 提出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事故報告書を 資料를 좀 받아봤으면 하는 게 要求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公印事故報告書を 받고 싶다 이거예요. 88年度부터 지금까지 公印을 잘못 使用해서 事故가 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內容을, 目錄을 받고 싶다 이거지요.

○內務局長 李元宅; 그것은 準備된 것이 없는데 나중에 書面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金泰雄 委員; 書面으로 해 주세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李丁煥 委員님.

○李丁煥 委員; 네, 먼저 우리 서울特別市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條例 第4條第3項에 보면 「市民賞은 年間 500名 以內, 公務員賞은 年間 200名 以內로 하되, 部門別 受賞人員은 市長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까 提案說明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人員을 施賞을 해왔기 때문에 92年度에 2,000名, 93年度에 1,000名, 그래서 94年度에는 이 대상에 公務員賞에 전부 吸收 統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附則에는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92年度에도 公務員賞은 200名밖에 施賞을 할 수가 없는데 運營上에 또 來년에는 2,000名을 施賞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論理的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그 條例는 이미 200名으로 못을 박았는데 來년에 어떻게 2,000名을 施賞을 할 수 있겠느냐.....

○內務局長 李元宅; 지금 現在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에 의하면 李丁煥 委員님 말씀하신 內容과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現在 下位職 公務員들에 대해서는 模範公務員과 優秀公務員의 表彰制度를 지금 實施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人員이 지금도 現在 相當數가 많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지금 現在 다 이 賞에 包含해서 없애 버리게 되면 지금 下位職의 公務員들이 대단히 지금 現在 그간에 있던 賞의 期待가 너무 거리가 差異가 나기 때문에 아까 說明한 대로 그것은 順次的으로 暫定的으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써 說明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丁煥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條例를 二重的으로 運營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 의하면 條例 第454號로 되어 있는 그 表彰條例를 利用을 해서 계속 그 優秀公務員한테 施賞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人事課長 權五虎; 네, 現在 우리 서울市가 表彰을 하고 있는 것은 表彰條例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專門委員님이 한 表彰條例 以外에 이 자랑스러운公務員表彰條例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二重이 아니냐 이런 指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分野別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多數의 人員을 줄 수 있는 制度인데 거기 보면 手當이라든지 혹은 推薦의 內容이 이것하고 전혀 相異합니다. 그리고 2,000名이

라는 많은 人員을 전부 市民들로부터 推薦 받아서 할 수 없는 形便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市公務員表彰條例에 보면 受賞人員을 市長이 別途로 정하도록 그렇게 委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委任된 範圍內에서 이 條例는 200名 以內로 限定을 하되 漸次的으로 그 條例에 의한 人員을 줄여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丁煥 委員; 그러면 어쨌든 같은 公務員으로서 表彰을 받더라도 자랑스러운 公務員賞을 받으면 手當이나 이런 것을 받고, 公務員表彰條例에 의한 것이면 그런 어떤 賞金이나 手當은 없는 경우로 그렇게 二重的으로 運營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人事課長 權五虎; 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定着이 되면 그 部門을, 條例를 取消을 하겠다 그런 條件으로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이 條例에 의해서 模範受賞者를 市民의 推薦에 의해서 公務員들을 전부 受賞하게 되면 現在 5萬餘 서울市에 下位職 公務員들이 그간에 받았던 每年의 연수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士氣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漸進的으로 해 나가면서 이 賞에 吸收하도록 하되 한 3·4年 동안 經過規程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다만 거기에는 여기에 낸 대로 施賞費나 別途 메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 賞에 吸收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여기서 다 施行하게 되면 下位職의 士氣問題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또 受賞의 內容이 다르기 때문에 暫定的으로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써 이것을 올렸고 그 點에 있어서는 專門委員께서도 說明이 되겠습니다만

그 條例案에 의해서 지금까지 各種 施賞制度를 모두 廢止하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시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많은 期待했던 下位職에 대해서 그간에 이미 받았던 사람과 여러 가지로 자기 身上을 反映하는 데 엄청난 損失이 있는 것을 緩衝해 달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분간 같이 運營하겠다는 뜻으로 알아주십시오.

○李丁煥 委員; 補充해서 더 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랑스러운公務員賞을 받았을 경우 고가의 가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公務員賞의 가점과 優秀公務員 表彰을 받았을 때 가점은 同一한 가점입니까?

○人事課長 權五虎; 現在는 지금 內務部에서 서울特別市人事規則準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점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서울特別市人事規則에 가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랑스러운公務員賞하고 一般公務員賞은 같은 市長의 表彰이고 동일한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스러운 公務員賞의 格을 높이기 위해서 內務部하고 現在 協議 中에 있는데 規則을 바꾸어야 더 올라가든지 되겠습니다. 現在는 同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格을 높이기 위해서 좀 높이는 것을 內務部하고 지금 協議 中에 있습니다. 그렇게 推進할 豫定입니다.

○李丁煥 委員; 그래서 제가 一般公務員 下位職公務員들한테 最近에 몇몇 直接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年末쯤 되고 이렸을 때 많은 公務員들이 進級을 위한 가점 때문에 事實表彰을 受賞하기 위해서 상당히 努力들을 하고 또 平素에 優秀公務員으로서 努力을 하고 또 末端, 洞에 가서 勤務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運營이 많이 잘못되고 있다. 즉 다시 말

해서 그 推薦權者가 區廳長이다 보니까 區廳長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施賞對象으로 選定을 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에 條例에 規定한 대로 清廉 勤儉하고 親切 奉仕하고 市政發展을 위해서 努力한 公務員이 施賞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區廳長님 눈에 잘보였느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今年에는 어느 洞에서 受賞者를 選定을 했으니까 來년에는 어느 洞에서 選定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먹기식, 소위 말하는 이런 식으로 運營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公務員의 士氣를 振作시키는 것이 아니라 公務員의 士氣를 低下하시는 그런 制度로 運營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들이 오히려 그 대상으로 決定되지 못한 公務員들한테 불만을 더 累積시키는 結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此際에 진짜 우리 賞의 權威도 높이고 必要性을 強調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우리 專門委員이 檢討한 바와 마찬가지로 表彰條例나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條例나 그 대상의 差異가 현격하게 없으니까 統廢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文化賞條例라든지 어린이靑少年賞條例, 市民大賞條例 이런 것은 소수의 人員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趣旨가 분명하기 때문에 살려 두더라도 그 두 가지 條例案은 此際에 과감히 統廢合을 하고 따라서 오히려 자랑스러운公務員賞의 數字를 더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1,000名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늘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統廢合하는 것이 此際에 좋지 않겠는가 하는 個人的인 意見입니다.

○李永鎬 委員; 지금 李丁煥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關聯해서 몰라서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한 일 같으면 그냥 그렇게 알려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表彰條例에 따라서도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운市民賞및公務員賞 여기 公務員들이 거기 該當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당분간은 같이 하겠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表彰條例는 점차 이게 數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內務局長 李元宅; 네, 그렇습니다.

○李永鎬 委員; 그런데 거기 問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條例를 새로 만드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기다 못 박으면 되는데 表彰條例는 줄인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아무 데도 우리 市議會가 決定하는 것에 의해서 못박아진 것이 없지요?

그런 경우에 市長이 바뀌어지고 또 內務局長도 바뀌어지고, 이래 가지고 "아니야 왜 있는 것 줄여 계속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疑問이 생기고,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機關長이 하나 바뀌게 되면 굉장히 확 바뀌는 것이 많아요.

둘째는 결국 이것을 나중에 슬슬 해 가지고 表彰條例는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市民賞이 나중에 남아 가지고 이것이 이제 施賞 表彰 이것의 主流를 이룩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內務局長 李元宅; 네.

○李永鎬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자랑스러운市民賞 원래 이것을 市民賞과 公務員賞을 같이 넣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것은 또 檢討해 봐야 할 問題 같아요. 왜냐하면 審査對象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審査委員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問題로 하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래 가지고 여기다 1,000名씩 이렇게 뭐 相當數를 주고, 여기는 이게 200名인가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이래놓고 무게는 또 비슷

하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條例를 만들어서 이것을 代替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統廢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經過規定으로 이것을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이렇게 줄여 가지고 整理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90몇 年度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200名이라는 數字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 놓아야지 이 두 개의 별도의 條例에다 이런 식으로 흠어 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管理가 제대로 안 될 可能性이 많고요. 混線이 상당히 생겨요. 자랑스러운 서울市公務員은 누구고 그 다음에 表彰을 통해서 받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래 놓으면 뭐가 위고 뭐가 밀이고 이것이 整理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條例를 統습을 해야지 이렇게 別途로 하는 것은 問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條例案을 어떤 時間內에 빨리 立法化해야 될 特別한 理由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와 같은 여러가지 提起된 問題를 다시 한 번 더 檢討해 가지고 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여기 文章도 보면 整理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例를 들 수가 있는데 第2條에도 보면 市民賞의 受賞對象은 서울特別市에서 1年 以上 居住한 事實이 있는 市民과, 그러면 1年 以上 居住한 事實이 있는 市民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사실이 있는 그러면 흡사 過去에 살았던 사람도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現在 時點으로 1年 以上 계속 居住하고 있는 市民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市民인데 過去에 1年 以上 있으면 어제 다시 서울에 들어와도 또 市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該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

는 것인지 文章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團體에 한하여는 나중에 여기 說明資料에 보게 되면 1年 以上된 것을 말하는데 1年 以上이라는 것은 거기에 該當되는 文章이 아닙니다. 서울特別市에서 1年 以上 居住한 事實이 있는 市民과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에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所在하는 團體, 그러면 어제 登錄한 團體도 該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例를 들어서 보면 文章이 整理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問題가 提起되었고 앞으로 討論을 통해서 또 提起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고 정 급한 일이 아니라면 1月이나 2月 되면 또 우리 市議會가 2月에는 틀림없이 열릴테니까 그때까지 더 생각을 해 보고 整理를 해서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鞠應好; 李丁煥 委員님 質疑하고 李永鎬 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동시에 하시죠.

○內務局長 李元宅; 네, 李丁煥 委員님하고 李永鎬 委員님이 먼저 質疑한 內容은 방금 專門委員이 問題點으로 提起했던 部分으로써 저희들도 상당히 이 問題는 바로 지금 現在 公務員의 受賞對象者를 選拔하는 過程에서 一線機關長이 自意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昇進과 關聯되었든 가점과 關聯했든 여러 가지 事項 때문에 그것을 整理하기 위해서 바로 提案했던 것이 이 公務員賞條例案을 내놓은 것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니까 조금 前에 이야기한 대로 많은 지금 기대했던 下位職이 脫落되는 問題 때문에 少數人員의 脫落되는 問題 때문에 暫定的으로 補充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뜻에서 내었던 問題라서 그 點은 提案者나 지금 專門委員이 말씀하신 것이

나 李丁煥 委員님이나 李永鎬 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과 그 內容은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했던 이 文脈關係는 저희들이 辯明하는 것보다는 法務官室에서 檢討가, 案이 나와 가지고 일부 不合理한 部分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의 檢討하도록 그렇게 措置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이냐 하는 問題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따른 모든 施賞金과 이것은 來年 1月부터 執行되어야 될 豫算에 이미 上程되었기 때문에 다소 補完해야 될 일은 다시 專門委員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審議하겠습니다만.....

○李永鎬 委員; 既存 條例案을 가지고 施賞은 언제 합니까?

○人事課長 權五虎; 既存 條例案은 每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매월 지금 上程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年末에는 거기에서 각기 綜合된 것을 可決하고 이래서.....

○李永鎬 委員; 그럼 每月하는 것은 이것 자랑스러운 市民賞도 매월 할 것입니까?

○人事課長 權五虎; 1년에.....

○李永鎬 委員; 그럼 그것은 아무 支障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每月하는 것은 지금 2,000名으로 줄인다. 그래서 그 基準에 따라서 1월이나 2月 정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월에 條例案이 通過되면 3월부터는 通過된 條例案에 따라서 하면 되고.....

○內務局長 李元宅; 지금 現在 이게 模範公務員이나 優秀公務員에 대한 表彰制度로 現在進行되고 있는 事案이 지금 줄이고 하는 事案은 바로 이것을 前提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可及的이면 通過를.....

○李永鎬 委員; 이것 通過는 하되 좀 體系를 맞추어서 通過를 하자 이거지요.

○委員長 鞠應好; 金容一 委員.

○金容一 委員; 네, 우리 두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本委員의 생각은 지금現在 上程된 議案에 조금도 뒤 前者에 비해서 蹉跌은 없다고 보고 저 역시 폭넓게 우리 두 委員님께서 널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지금 現在 案대로 滿場一致로 決議하실 것을 動議를 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저도 좀 意見이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事項을 이렇게 混同시킬 것이 아니라 기왕에 손뭉 바에야 公務員表彰 또는 公務員賞하고 一般市民의 賞하고를 나누세요. 그래야 일하기도 便利하고 體系도 쉽니다. 公務員들은 어떻게 어떻게 表彰한다 하는 것으로 公務員에 關한 事項만 規定을 하고 一般市民에 대해서 하는 事項은 그렇게 規定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있던 것과 자꾸 聯關시켜서 어려운 事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附則에 經過規程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있던 것과 聯關시키는 것은 이 條例案의 附則에다 놓고서 연계시켜서 그것을 자꾸 만들고 이럴 일이 기왕에 統廢合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다시 混同을 가져와요.

例를 들면 한 가지 條例 가지고 公務員도 타치하고 시민들도 타치하고 또 다른 條例도 公務員도 타치하고 市民도 타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그것과 아까 우리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한 것처럼 文化賞條例 같은 것은 이것은 明白해요. 아주 限界가 있고 特殊分野니까 그것은 明白한데 그 以外에 表彰條例 그 다음에 어린이및靑少年條例도 이게 限界가 分明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市民賞에다 그냥 넣어 버리면 돼요. 그

리고 이것은 어린이分野, 이것은 靑少年分野, 이것은 무슨 分野 그리고 方法도 差等を 두고 싶으면 이 方法 이렇게, 이 方法은 이렇게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이 文章構成의 테크니컬한 面에서 얼마든지 調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不分明하고 混畵된 이러한 條例를 만들어 가지고 運營하는 것은 이것은 運營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것을 손대서 統畵한다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方法으로 整理하기 위해서 이것 다시 提議하면 어때요?

○人事課長 權五虎;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李丁煥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現行 表彰制度가 상당히 問題點이 있습니다. 우선 選定過程이 昇進에 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優秀한 公務員이, 진짜 表彰받 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누어먹기식의 表彰이 지금 現在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서울市가 政府에 提案을 해 가지고 政府가 加點制度를 지금 고쳤습니다. 昨年에 고쳤는데 서울市는 2年만 施行을 하고 그만 두자 이랬는데 全體 全國에 있는 人事擔當課長들이 모여서 會議를 한 結果 2年으로 確定을 했는데 政府가 그 大統領令을 改正을 하면서 6年으로 늘려 가지고 96年부터 이 加點制度가 전 부 없어집니다.

지금 現在 서울市는 이런 問題點을 그냥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表彰 數字를 좀 줄이자 하는데 기본 目的을 가지고 그러면 1年에 4,000名씩 하던 것을 당장 대안없이 줄여 가지고는 이것이 問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公務員賞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民도 엄청난 表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表彰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表彰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表彰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했는데 公務員社會가 推薦을 하고 公務員社會가 審査를 하면 또 다시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市民이 한번 推薦해 가지고 진짜 公務員을 推薦하고 市民도 그렇게 하자는 趣旨에서 바로 아까 그 公務員을 推薦하는 推薦機關이 틀리고 審査機關이 틀립니다. 완전히 客觀的인 市民들이 진짜 賞 받을 사람 뽑아 보자 하는 趣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4年度나 이 정도 가면 완전히 우리가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없애는 데는 事實은 이런 方針을 이렇게 내면서도 서울시로써는 公務員들이 지금 40,000餘 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랑스러운 公務員賞으로 1년에 60萬원씩 手當을 주면서 無限定으로 늘릴 수도 없는 形便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다 없앨 수 있느냐 하는데도 저도 懷疑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今年에 없앤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는 어떤 個人이 낸 것이 아니고 現在 公務員社會가 이런 必要 때문에 만든 것이지 어떤 누가 特定人이 이것을 要求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制度라 하는 것은 항상 時期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市長님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 公務員賞에 대한 이런 制度를 이대로 維持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公務員賞도 줄이는 것으로 維持를 하고 이것도 維持를 해 가지고 最小限度로 줄여 가지고 줄여도 되겠다고 判斷될 때에 이걸 없애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部分을 아까 專門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委員

長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개를 當分間은 일단 내년부터 줄이면서 그냥 維持를 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없앴다가 또 問題가 생기면 그 表彰이 전부 다 없어질 때 그 公務員들의 士氣問題도 상당히 또 憂慮가 되고, 이 賞은 無限定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쪽으로 보면 좋은데 이것은 豫算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廢止 統合을 하면 賞이 없어지나, 줄어드나?

○人事課長 權五虎;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時限을 정해 가지고 94년까지 없애자는 그런.....

○委員長 鞠應好; 아니, 줄이거나 없애지는 말고 條例의 體系만 하나로 해 놓고 그 內容에다 집어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없애지 말고 나는 없애라는 이야기가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形式上 비슷한 條例가 세 개나 있어 가지고 오히려 混同을 가져오니 條例 하나로 統合을 시켜놓고 그것을 分野別로 나누어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주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되 이 條例 體系를 體系化하자 그 이야기예요.

○人事課長 權五虎; 立法技術上의 問題가 되겠습니다만 對象을 公務員, 市民으로 限定하면 이게 委員長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推薦하고 審査委員會라 하는 節次面에서 보면 이것은 主體가 누구냐, 施賞을 하는 主體가 완전히 市民으로 돌리고자 하는 部分입니다. 公務員 部門은 施賞하는 主體가 市長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市民들이 그 主體를 基準으로 區分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問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永鎬 委員; 그런데 市民賞하고 公務員賞은 審査委員은 같

은 審査委員이 하는 것 아니에요?

○人事課長 權五虎; 네, 그렇습니다.

○李永鎬 委員; 그러니 그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여기 發言權 얻으셨으니까 文一權 委員 말 씀하시지요.

○文一權 委員;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甲論乙駁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內務局長이 지금 다시 좀 研究를 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말의 語助辭의 表現은 뇌에서 나올지 몰라도 즉 文章에 들어가서 表現力과 語助辭는 同一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語彙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되면 限界性이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긴급히 해 가지고 해야지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이 案을 이대로 通過를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날새도록 해도 甲論乙駁밖에 안 됩니다.

단 거기에 말입니다. 敷衍해서 이야기한다면 審査內容을 市民이 推薦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專門委員이 이야기한 대로 市 우리 委員들이 千萬 市民의 代辯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둘도 좋고 몇도 좋습니다, 셋도 좋고 거기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고 그 審査內容은 公開規程을 두어야 합니다. 內務局長, 아시겠어요?

○內務局長 李元宅; 네.

○文一權 委員; 그 表現과 語助辭는 어떠한 方法으로 바뀌어서 語彙가 잘 돌아가더라도 審査規程이 公開되지 않는 規定은 나누어먹기식이 되고 속된 말로 백있는 사람은 거기에 該當이 되고 백없는 사람은 該當口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公開規程을 原則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소위 公績內容도 公

開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안 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끝냅시다.

○委員長 鞠應好; 公開性問題에 대해 答辯하세요.

○人事課長 權五虎; 公開問題는 非公開를 못에 안 박은 理由로 規定을 안 한 以上 이것은 公開의 原則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條例가 非公開를 前提로 했을 때는 이게 公開가 안 되지만 非公開란 用語가 없으면 완전히 公開가 되는 것입니다.

○文一權 委員; 審査內容이 推薦…….

○人事課長 權五虎; 그것은 審査委員들이 全體가 다 보는 事람이기 때문에 넘기고…….

○文一權 委員; 推薦 功績 같은 것은 전부다 公開原則이다?

○人事課長 權五虎; 네, 그렇습니다.

○吳基昌 委員;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審査委員이 서울市長이 斯界 著名人事 中에서 市長이 委囑하도록 되어 있는데 斯界 著名人事가 누구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文一權 委員; 그러니까 公開內容으로 할 바에는 差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니요?

○吳基昌 委員;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敎育委員 뽑을 적에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라고 그렸어요. 學識과 德望을 뭘로 갖다 基準을 둘거요? 그래서 問題點이 또 많았다고…….

○內務局長 李元宅; 네, 이것이 全 市民에게, 千萬市民에게 公開해서 다 하면 가장 많은 分들의 共感帶를 形成하는 것이 되어서 가장 좋은 方法이 되겠습니다만 이 受賞對象者가 相當數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게 技術的으로 實際 運營上 可能하

겠느냐, 따라서 市民의 代表라고 보는 여기에 權威가 있고 하는 분들을 委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賞의 權威를 위해서도 아무나 委囑하라 해도 그 올린 機關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關係, 이 內容이 法務官室에서 檢討가 되어 가지고 사실 提案說明은 제가 합시다만 원래 이것이 全部 條例關係의 各條文 하나 하나는 거기에서 전부 檢討된 內容인데 오늘 와서 檢討하는 過程에 보니까 다소 이제 指摘한 內容들이 文面이 조금.....

○李永鎬 委員; 조금이 아니고 그 한 가지 例만 들었지 딴 데도 많아요.

○內務局長 李元宅; 네, 그래서 文面整理는 다시 한 번 整理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可及的이면 年內에 이 案을 通過를 좀 시켜주셨으면 來年부터 이것이.....

○文一權 委員; 委員들께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通過해 달라고 하면.....

○李永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鞠應好; 네, 李永鎬 委員 말씀하시죠.

○李永鎬 委員; 趣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同意를 합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전부 여기 內務委員會에 계시는 同僚委員들이 다 趣旨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지금 改善하고자 하는 趣旨는 다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데 文章이 우선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서울市가 推進하는 것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좀더 잘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意見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文脈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여기 아까 한 가지만 指摘했지만 제가 어찌다가 본래 志望한 科에서 떨어져 가

지고 國文科에 2志望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文章이 이것 보면 참 서툴게 만들었어요. 法務官室에서 어떻게 檢討를 했는지 年末에 바빠 가지고 이런 식으로 檢討를 했는지, 그러니까 年內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만하면 우리가 通過시켜도....." 왜냐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通過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準備하기 나름입니다. 잘 만들어 내게 되면 年內 通過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또 이제 하는 수 없이 來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努力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人事課長 權五虎;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자, 答辯 들어봅시다.

○人事課長 權五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年以上 居住 事實이 있는 市民과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團體에 한하며, 이것은 만들면서도 이것이 1년이 앞까지 걸리느냐 뒤에까지 가느냐 하는 問題가 상당히 論難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條例案을 이렇게 協助하는 과정에 있어 그 問題를 提起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市民賞에 包括되는 것은 市民과 團體를 包含해서 市民賞이라고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年 以上 그러는 것이 居住한 사실이 있는 市民과.....

○李永鎬 委員; 그것 지금 說明하지 마세요. 그것 說明해서 무엇 하려고 해요.

○文一權 委員; 이봐요. 人事課長, 시간이 없으니까 자구정정을 만들든가 그래야지.

○李永鎬 委員; 文章되지 않는 것을 說明해 놓으면 나중에 說

明을 어디 附則으로 붙이려고 그래요?

○人事課長 權五虎;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第7條第3項은 「委員은 서울特別市 內務局長을 當然職으로 하고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2人 以上 및 斯界 著名人事 中에서 市長이 위촉한다」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專門委員께서 提案하신 事項인데 受賞候補者에 대한 객관적인 審査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第9條에다 受賞候補者에 대한 事實調査 그래 가지고 「추천된 候補者에 대하여는 監查官室에서 事實與否를 調査하여 功績審査委員會에 提出을 하여야 한다」 그것 한 項을 더 넣고 第9條第2項은 第10項으로 순열을 해서 대신하고 第10條第2項에다가 「委員會의 審査는 推薦書와 事實調査 및 功績調書에 의하여 審査한다」 그렇게 넣으면 좀 完璧한 것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第2條에 1年 以上을 3年으로 하는 것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修正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이렇게 합시다. 오늘 條例案이 議案 第1項 案件, 第2項 案件, 第3項 案件인데 지금 第1項 案件을 가지고 이때껏 이야기를 했는데 第2項이나 第3項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議案 第2項과 3項은 완전히 通過가 되는 것으로 하고 1項은 27日 本會議가 오후 3時에 열리니까 여러 委員님들 죄송하지만 2時까지 한번 더 나와서 內務委員會 第5次 常任委員會를 27日 오후 2時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열겠습니다.

執行部에서는 아까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趣旨
는 다 贊成을 하고 이것을 잘 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미비
한 點이 있으면 서로 망신이니까 이 未備한 點을 補完해 가
지고 27日 完璧하게 이 案을 만들어서 本會議에 移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條例審議特委에 移送하는 案까지 다 만들
어서 그래서 27日 한꺼번에 다 處理를 해 드릴 테니까 準備
를, 지금 委員님들 말씀은 速記錄을 參酌하고, 또 우리 專門
委員의 意見을 尊重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한 議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感謝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議案 第2項과 第3項 案件 서울特別
市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公印條例
案이 通過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鞠應好; 議案 第1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7日 다
시 討議하겠습니다.

4. 1991年度內務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15時 40分)

○委員長 鞠應好; 다음은 議案 第4項 1991年度 內務委員會所
管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專門委員, 作成된 案을 한번 說明하고 朗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炳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を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1年度 內務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뒤에 실음)

.....
以上입니다.

○吳基昌 委員; 訂正하나 할 것 있는데요.

○專門委員 兪炳敦; 네.

○吳基昌 委員; 6페이지 監査官 12月 3日, 南山外人아파트가 아니고 南山아파트입니다. 外人字를 지우세요.

○專門委員 兪炳敦; 네.

○委員長 鞠應好; 이제 우리가 監査報告書を 本會議에 내면 本會議에서 採擇해 가지고 이게 이제 執行部로 가면 執行部가 그대로 기속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是正하라는 것은 是正을 해야 되고 指摘된 것은 是正해야 되고 맨 뒤에 建議事項이라고 하는 用語가.....

○專門委員 兪炳敦; 그것이 저쪽의 裁量에 달려 있고, 建議事項이에요. 是正要求는 是正을 해야 됩니다. 是正要求는 嚴密하게 이야기하면 若干의 責任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處理要求는 그대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리고 그 建議事項이라고 하는 것이 議會가 執行部에 建議했다 이 말입니까? 建議事項이라고 하는 것

은 監査報告書에서 建議事項이라는 말은 그것은 適合하지 않은 것 같아요.

○專門委員 兪炳敦; 監査結果處理가 이제 세 가지 有形으로 分類가 되는데요. 是正要求事項하고 處理要求事項하고 建議事項 세 가지입니다. 建議事項은 嚴密하게 이야기하면 이쪽의 希望을 이야기하면 되지요. 處理要求事項하고 是正要求事項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무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處理要求事項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建議事項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監査해 가지고 뭘 建議해요? 指摘하면 그 만이지.

○金容一 委員; 監査해 가지고 建議할 바에는 監査할 必要가 없지요.

○委員長 鞠應好; 그냥 指摘事項이라고 하면 어때요? 建議事項은.....

○吳基昌 委員; 指摘事項이라는 制度가 없으니까 處理事項으로 處理해 달라.....

○委員長 鞠應好; 그것을 檢討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質疑應答을 하거나 監査하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 委員 個個人이 무슨 소리든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討論하고 質疑하고 하시는데, 監査報告書 같은 데에서 이걸 是正事項이나 要求事項으로 해서 딱 넣어놓으면 그것은 內務委員會의 公式意見이 된다는 말이에요. 個人의 意見이 아니고, 그러면 是正事項이 要求事項이 쪽 왔던 것이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意見一致를 보았다는 節次를 밝지 않았는데 그냥 각자 委員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發言한 것이 여기 그대로 실려 있는데 나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專門委員 俞炳敦;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建議事項은 調整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그러니까 이것을 委員님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만일 여기에서 監査結果處理意見해서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하라 하고서 서울市長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專門委員은 여기 쪽 있었던 것을 다 浮刻을 시켜서 어떠한 特定委員님이 자기 私見이 되었던 見解의 差異가 있던 全部 羅列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文書化해서 다음 回期때 是正結果報告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가 公式的으로 여기에서 意見이 收斂된 議決이라기보다도 다 異議없는 結果를 가지고 저쪽에 지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委員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吳基昌 委員;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李永鍾 委員;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委員長 鞠應好; 이것도 뭐 이번 會期 中에 採擇해서 本會議에서 採擇이 되어야 되겠죠. 27日 前에 本會議에 報告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金泰雄 委員; 그러면 이것도 조금 손을 보고 생각을 해서 通過시키죠. 그런 어떤 지금 問題點이 있고 確答이 나올 수 없는 그런 事項이라면 專門委員이나 小委員會에서 檢討를 더 해서.....

○委員長 鞠應好; 예를 들면 班常會 運營이 效果가 없는 바, 運營改善을 하든지 廢止하든지 擇一할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是正措置란 말이에요.

○吳基昌 委員; 그것은 좋은 거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李永鎬 委員;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運營改善을 하든 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吳基昌 委員; 상관없어요.

○委員長 鞠應好; 그 길을 열어 준 거라 이 말이죠?

○李永鎬 委員; 그렇죠. 運營을 改善하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委員長 鞠應好; 그리고 統長任期制의 徹底한 施行과 年齡上 限制 導入.....

○吳基昌 委員; 그것 좋은 것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이것도 그 때 우리 괜찮다고 다 同意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泰雄 委員; 그런데 年令은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몇 세부터 한다는 것, 그때 이야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委員長 鞠應好; 너무 노인들이 統長하고 다니는 것이 안 좋다.

○李永鎬 委員; 導入에다 檢討라는 말만 하나 붙이면 될 거예요. 導入 다음에 年令上限制導入 檢討,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죠.

○委員長 鞠應好; 民願處理에 있어서 時限을 지키기 위해서 形式的으로 處理하고 實質的으로 民願을 受容的으로 檢討하지 않는 傾向이 있음. 民願處理體系를 大幅 改善할 必要가 있음, 이것 좋고. 財政自立度나 基準財政需要充足度가 有用한 基準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代替할 基準을 開發할 것.

○李永鎬 委員; 이것은 상관없지요.

○委員長 鞠應好; 이것은 내가 한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렇게 表現이 되지를 알고.....

- 專門委員 俞炳敦; 아니, 李永鎬 委員님이.....
- 委員長 鞠應好; 아,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 李永鎬 委員; 둘다 本人...... 자기네들 資料에도 둘 다 問題가 있다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 委員長 鞠應好; 代替할 基準을 開發할 것, 이게 지금 財政需要交付金條例를 改正해야 하는 問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自治區 財政交付金を 나누어 주는 條例는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그 條例를 만드는 것 以外에 代替基準을 開發할 것.....
- 李永鎬 委員; 그런데 지금 사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 委員長 鞠應好; 財政充足度 측정하는 방안 이야기였죠?
- 李永鎬 委員; 네, 그것도 問題가 있기 때문에 財政交付金を 나누어 주는 그 基準이 지금 이것도 報告 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그 基準이 그대로 하게 되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基準이 없이 지금 交付하는 거예요.
- 委員長 鞠應好;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5級 公務員의 昇進試驗資格의 合格者 決定의 不均衡問題를 是正할 것, 뭐 이것도 一般的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各 區廳 課長級 公務員의 對民姿勢가 高壓的이고 禮儀가 없다는 非難이 있는 바, 對民奉仕姿勢의 轉換 要望,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現在의 民防衛訓練 및 計劃의 科學化, 體系化를 통한 核戰爭의 對備策을 講究하라,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監查期間 中 海外 出張時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消防本部 業務에 대한 接近 態度가 積極的일 것,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危險手當이 月 1萬 1,000원인데 10년이 넘도록 引上되지 아니하였다. 士氣振作

의 對備策을 세울 것.

○李永鎬 委員; 조금 전에 거기 보면 業務報告하면서 동그라미가 빠진 것이죠? 그 앞에 民防衛局 끝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이 빠졌지요?

○專門委員 兪炳敦; 네.

○李永鎬 委員; 業務報告보다는 業務推進이지, 業務報告에 積極性和 創意性を 보일 것은.....

○專門委員 兪炳敦; 業務推進이라고 고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이것도 됐고, 高層化에 따르는 消防裝備 現代化 科學化 對策을 講究할 것 消防 7個年計劃에 의하여 1區 1署가 되기 前이라도 不合理的한 消防署 管轄區域을 調整할 것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 「나. 建議事項」이라고 한 이 建議事項 네 글자가 마음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 自治法에 그렇게 있어요? 建議事項이라고 되어 있어요?

○李永鎬 委員; 그런데 우리가 監査期間 동안 繼續해서 建議事項을 써내라 그랬다고요. 監査할 때마다.....

○委員長 鞠應好; 建議事項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 建議事項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指摘事項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 봐요. 指摘이라고 고치면.....

○專門委員 兪炳敦; 여기 施行令에는 指摘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處理要求事項 다음에 그냥.....

○委員長 鞠應好; 處理要求事項에다 이것을 집어넣든지.....

○專門委員 兪炳敦; 그렇게 할까요?

○委員長 鞠應好; 한번 읽어보고, 住宅, 上水道, 建築 分野에 勤務하는 公務員에 대한 監視를 徹底히 하고 非違 豫防에 대한 教育을 實施하기 바람. 이것 저기 是正要求事項에다 집어넣어요.

○專門委員 俞炳敦; 네.

○委員長 鞠應好; 民防衛局 軍事保護區域 및 對空協助의 過多한 策定 이로 인하여 市民의 財產權의 侵害가 많음. 따라서 最小限의 制限區域 設定을 建議함. 이것은 是正事項으로 할 수가 없지요. 法律事項이니까...... 우리 市長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이것?

○專門委員 俞炳敦; 이거야말로 建議事項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이것은 빼요,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民防衛業務의 效率性を 提高하고 業務推進의 成果를 評價할 수 있도록 民防衛業務를 分野別로 나누어 目標基準을 設定, 效果를 測定할 것. 이것은 是正할 수 있네요. 習知基準이라는 것이 뭐예요? 施設基準, 習知基準 이 用語는 처음 듣는 用語인데......

○李永鎬 委員; 施設基準이라는 것은 待避所가 必要한 만큼 있느냐, 習知는 이제 一般 民間人이나 民防衛訓練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委員長 鞠應好; 이것 用語가 民防衛法 어디에 나와 있는 用語입니까?

○李永鎬 委員; 아니에요.

○吳基昌 委員; 아니요. 解釋하는 거지요.

○李永鎬 委員; 알 것을 알고 있느냐......

○委員長 鞠應好; 民防衛業務의 效率性を 提高하고 業務推進의 成果를 評價할 수 있도록 民防衛業務를 分野別로 나누어 目標基準을 設定하여 效果를 測定할 것. 習知基準, 이것 이대로 그냥 뒹요. 괜찮겠어요?

○吳基昌 委員; 괜찮아요.

○委員長 鞠應好; 네. 民防衛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할 수 있도록 民防衛 經濟的 費用을 推定할 것.

○李永鎬 委員; 이것은 빼 버려도 상관 없어요.

○文一權 委員; 是正 소리가 안 들어가겠는데요, 거기에.....

○委員長 鞠應好; 글쎄, 이것은 빼지요. 抽象的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李永鎬 委員; 아니, 내가 한 말인데 經濟的인 코스트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民防衛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인데.....

○委員長 鞠應好; 그 다음에 消防本部, 解決해야 할 問題와 現在의 對處能力 사이의 罅을 檢討하고 對處能力을 提高시킬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할 調查研究를 施行할 것. 이것도 말이 되고 對答하는 側에서 困難하겠고만 消防署가 없는 區에 消防派出所에 대한 徹底한 消防教育을 要望함, 要望하지 말고 消防教育을 實施할 것, 實施 檢討 그러지. 兪委員 애매한 것은 檢討, 나중에 저쪽이 이쪽 끌고 올 것 같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되받아칠 것 같은 것은 檢討 이렇게 끝에 써요. 內務局, 行政電算網體制 早速한 構築 그것도..... 이것 돈 달라고 하게 생겼네.....

○李永鎬 委員;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行政電算網 하나까 생각이 나는데 消防署의 指揮體系를 電算化하고 있잖아요. 計劃을 내 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口頭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다. 그럼 그때 事實 重要的 問題가 뭔가 하면 警察의 電算化 指揮體系하고 이것을 統合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굉장히 重要하다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美國 같은 곳은 全國的으로 다 하고, 일본도 全國的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用語로 인터페이스인

가 그런 用語로 쓸 거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統畵을 해야지 消防署 따로 警察 따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委員長 鞠應好; 이것은 內務局所管도 아닌데..... 지금 電算室이 企劃管理官所管이지요? 電算室이 따로 있던 말이에요. 우리 서울市에 磼연히.....

○吳基昌 委員; 빠 버리죠.

○李永鎬 委員; 그냥 놔둬요. 아니, 內務局 이야기는 아니고 그 위에 消防本部 이야기인데 消防本部에 지금 이때까지는 전부 다 電話를 해 가지고 소리 소리 치거든, 뭐 鍾路消防署에 차가 몇 대 있느냐.....

○文一權 委員; 이것도 消防電算施設도 市警같이 이야기하면 그것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李永鎬 委員;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問題예요. 사실은.....

○委員長 鞠應好; 이것을 本廳 電算體系에 連繫를 講究할 것.

○文一權 委員;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낫지, 本廳.....

○委員長 鞠應好; 이게 內務局을 지워버리면 消防本部所管 아니에요?

○專門委員 兪炳敦; 그렇죠.

○委員長 鞠應好; 그러니까 電算網 體制의 行政이란 소리를 빼고 電算網體制의 本廳電算室과의.....

○李永鎬 委員; 아니, 本廳이 아니고 警察廳이에요.

○委員長 鞠應好; 그럼 警察廳 電算室과의 紐帶方案을 講究할 것, 共同使用料나 뭐.....

○金容一 委員; 紐帶가 안 되지요.

○李永鎬 委員; 일종의 統畵이에요. 連繫라고 하는 것이.....

○委員長 鞠應好; 連繫方案을 講究할 것, 그러니까 警察의 잘 되어 있는 電算網을 消防署에서 좀 기대라 그런 뜻의 文句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 넣어요.

○專門委員 俞炳敦; 電算網體制的 警察廳 電算網 連繫 方案을 講究할 것.

○委員長 鞠應好; 네.

○李永鎬 委員; 警察廳과.....

○委員長 鞠應好; 그 다음에 기타 監查意見 및 特記事項 書類는 그렇게 하지 말고.....

○文一權 委員;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어요.

○委員長 鞠應好; 이것은 그냥 參考事項 이렇게 해 버리라고, 7. 參考事項, 參考事項하고 네 가지 그냥 다 써 버리고.....

○李永鎬 委員; 그런데 6이 없어지니까 6이 되지요.

○委員長 鞠應好; 네, 6. 參考事項 하고서 8,9번 없으니까 없는 것 題目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프린트해 가지고 27日 다시 한 번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議案 第4項 1991年度 內務委員會所管 行政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은 一部 다시 油印物로 해서 27日 報告하는 것을 前提로 해서 採擇한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우리 內務委員會 第4次 會議를 以上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10分 散會)

○出席委員

鞠應好 丁寅燮 文一權 朴禧柱

李永鎬 白中元 李丁煥 尹鎭商
吳基昌 金泰雄 趙熙濬 姜晶錫
金容一 李迎春 韓仁沫

○專門委員

俞炳敦

○出席公務員

內務局長 李元宅
人事課長 權五虎